

대구지방법원 2021. 2. 10 선고 2020나311396(본소), 2020나311402(반소) 판결

[물품대금 ·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오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정길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광진

변 론 종 결 2021. 1. 20.

판 결 선 고 2021. 2. 10.

제1 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영주시법원 2020. 6. 10. 선고 2019가소 10873(본소),
2019가소2278(반소) 판결

주 문

1.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는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23,643,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29,900,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4.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및 선정자에 대한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경부터 ‘C 경북대리점(이하 ‘C’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식육 도소매업을 하였다.

나. 원고, 선정자, D은 각자 출자하여 동업으로 2015. 10.경 상주시 E에 주식회사 F를 설립하고 식육판매업을 시작하였다가, 2016. 3.경 위 동업을 종료하고 피고와 선정자가 동업자산(주식회사 F의 자산, 이하 ‘이 사건 동업자산’이라 한다)을 인수하여, 피고와 선정자(이하 ‘피고 등’이라고 한다)가 2016. 3.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G’라는 상호로 식육판매업을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경부터 2018. 9.경까지 C 운영자로서 피고 등에게 식육 등을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5~10호증, 을 제1~7, 11~14,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및 쟁점

가. 원고

피고들은 이 사건 동업자산을 인수하면서 주식회사 F의 H조합 I대리점에 대한 채무 41,468,950원을 인수하고,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2016. 3.경부터 50,000,000원을 C의 미수금으로 등록한 후, 피고들에게 식육 등을 납품하여 왔다. 원고와 피고 등 사이에 여러 차례 납품과 변제가 이루어진 결과 2019. 4. 3. 기준으로 23,643,260원의 납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피고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잔여 납품대금 23,643,2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 등은 이 사건 동업자산을 인수하면서 주식회사 F의 채무 41,468,950원을 인수하고, 2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를 모두 이행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미수금으로 50,000,000원을 등록한 후, 이를 기준으로 납품대금을 구하고 있다. 피고 등이 지급할 의무가 없는 돈을 미수금에서 제하고 원고로부터 실제 납품받은 대금 62,388,01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피고 등은 원고에게 29,900,790원(실제 결제대금 92,288,800원 - 물품대금 62,388,010원)을 초과로 지급하였음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29,900,7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반소로 구하는 금액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돈임을 인정하고, 원고가 미수금으로 30,000,000원만 더 등록한 것으로 주장을 변경하고도, 반소 청구취지나 항소취지의 변경이 없었으므로 종전 주장대로 기재한다).

다.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원고가 지급받기로 한 이 사건 동업자산 인수대금 액수와 ② 원고의 피고 등에 대한 납품 액수이다.

3. 판단

가. 원고가 지급받기로 한 이 사건 동업자산 인수대금 액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식육 등을 피고 등에게 납품한 후 발행하여 교부한 각 매출거래명세서(2016. 3.경~2017. 7.경)의 우측 하단에는 원고가 이 사건 동업자산 인수대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음을 기준으로 한 총 미수잔액이 기재되어 있어 피고 등이 계속하여 확인할 수 있었던 점, ② 피고는 2016. 6. 30. 원고에 대하여 미수금이 42,967,390원이라는 내용의 잔액확인서를 작성해준 점(이에 대해 피고는 잔액확인서에 ‘거래원장 fax 발송 부탁 요망’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미수금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기재만으로 미수금액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고, 원피고가 주장하는 인수대금의 차이가 30,000,000원이나 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기재는 실제 납품한 거래대금 부분을 확인하겠다는 의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 등은 잔액확인서를 작성해준 2016. 6. 30. 이후 2016. 12.경까지 원고로부터 1,000,000원 상당의 납품만 받았음에도 16,400,000원 상당을 변제한 점, ④ 원고와 선정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납품 요청, 반품 요청, 대금 납부 요청 등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미수금 액수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바는 없는 점, ⑤ 피고는 이 사건 소의 초기에는 주식회사 F의 채무 41,468,950원 변제만이 이 사건 동업자산 인수조건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기준으로 반소까지 제기하였다가, 원고가 피고가 2016. 3. 31. 2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밝히자 그때서야 20,000,000원은 인수대금이었다고 주장을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지급받기로 한 이 사건 동업자산 인수대금 액수는 채무인수금 41,468,950원 외 50,000,000원이었고, 이를 미수금에 넣어 변제받아 왔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지급할 이 사건 동업자산 인수대금을 초과하여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반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의 피고 등에 대한 납품 액수

1) 원고는, 피고 등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총 115,932,060원(= 이 사건 동업자산 인수대금 50,000,000원 + 거래기간 납품대금 합계 65,932,0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92,288,80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23,643,260원(= 115,932,060원 - 피고 등 결제대금 92,288,8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피고는, 피고 등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총 납품대금은 62,388,010원이라고 주장한다.

2) 원고가 제출한 거래처원장과 피고가 제출한 이 사건 반소장의 미수금 및 변제내역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납품대금 중 인정하지 않는 부분은 2016. 3. 21.자 미수금 2,440,250원과 2016. 4. 19.자 납품대금 2,649,450원임을 알 수 있는데[위 납품대금의 합계 5,089,700원(= 2,440,250원 + 2,649,450원)이 원피고가 주장하는 납품대금의 차액 3,544,050원보다 많은 것은 원고가 1,327,800원 상당의 반품을 인정하면서 이 부분은 구하지 않고 있고, 피고가 원고가 제출한 거래처원장에 있지 않은 납품대금까지 일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 특히 갑 제3,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등에게 위 납품대금에 해당하는 납품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2019. 4. 3. 기준 피고 등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미수금은 23,643,260원이고, 이는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바, 피고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수금 23,643,2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9. 4. 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9. 8.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백정현, 판사 권형관, 판사 권비룡

선 정 자 명 단

- 1. B
- 2. J
- 끝.